

# [제 1364 호]

2017년 4월 11일(화)

# 고양시보



## 차 례

###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7-648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17-650호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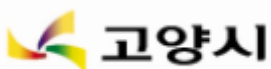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7-123호	고양시 원당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7
고양시 고시 제2017-124호	사방지 지정고시	43
고양시 고시 제2017-1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45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7-645호	고양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위원 모집 공고	48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7-178호	공인등록 공고	49

# Goyang City



| 발행 : 고 양 시 | 편집 : 공보담당관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지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3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2, 제59조, 제59조의2)
- 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8075-2529)
- 팩 스 : 031-8075-490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를 “시”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을 “(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대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매각” 을 “매각” 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를 “해당 연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라 한다)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이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제59조의2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제62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대부·매매·교환계약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적용은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2, 제59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2016. 7. 12.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 및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체결한 대부·사용계약에 대해서는 제27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과		회 계 과
입안자	과장 성명	회계과장 김석진
	팀장 성명	재산관리팀장 백용구
	담당자 성명·전화	김성은 (031-8075-252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⑤</u>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u>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u>에서 직접 시행한다.</p> <p><u>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영 제23조제2호, 영 제29조제1항 제7호, 영 제30조제1항, 영 제32조제3항, 영 제35조제2항, 영 제38조제1항제25호,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 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u></p> <p><u>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u></p>	<p><u>제19조의(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 기구가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p> <p>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p> <p><u>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u> (현행과 같음)</p> <p>⑥ ----- ----- ---- <u>시</u>-----.</p> <p><u>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u></p> <p><u>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대상 등) -----</u> ----- ----- -----</p>

현 행	개 정 안
<p>이라 한다)에 <u>대부·매각</u>이 가능한 공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b>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b>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u>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p> <p>3. ~ 6. (생략)</p> <p>⑤ (생략)</p> <p><b>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p>	<p>-----매각----- -----.</p> <p>1. ~ 6. (현행과 같음)</p> <p><b>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b>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3. ~ 6.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p>	

현행	개정안
<p><u>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u></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u></p> <p>가. <u>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u></p> <p>나. <u>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u></p> <p>다.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u></p> <p>라. <u>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u></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u></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u></p> <p>사. <u>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u></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u>해당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u></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u>해당 연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u> ----- ----- -----.</p>

현행	개정안
<p><b>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b></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p> <p>③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b>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 2. -----</p> <p>&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b>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③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b>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b>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p>

현행	개정안
<p>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b>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b> 영 제 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b>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p> <p>① (생략)</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② ~ ③ (생략)</p>	<p>-----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p> <p><b>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b>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이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b>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b>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b>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b>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b>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b>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p>
<p><b>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b>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p>	<p><b>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b> ----- ----- ----- -----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p>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나. 제설·제빙 시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위험예상 시 제설·제빙을 중단하도록 함.  
(안 제6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031-8075-2995)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

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보호 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

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 관리부서)**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시민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시민안전과 김 대 식
	팀 장 성 명	자연재난팀장 김 충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수 현 (031-8075-2995)

[별표]

###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0.5이하 지역 (고양시에 해당)	25.0	37.5	
<p>비고</p> <p>1.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p>			

#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u></p>	<p><u>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li> <li>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li> <li>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li> <li>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li> </ol>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li> <li>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li> </ol>



현행	개정안
<p>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p> <p>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p> <p>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p> <p>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p> <p>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p> <p>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p>
<p><b>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b>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p>	<p><b>&lt;삭제&gt;</b></p>
<p><b>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b>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p> <p>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p>	<p><b>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b>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p> <p>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p>

현행	개정안
<p>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p> <p>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p>	<p>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순으로 한다.</p> <p>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p>
<p><b>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b>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p> <p>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p>	<p><b>제4조(제설·제빙 범위)</b>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p> <p>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p> <p>3. 시설물의 지붕</p> <p>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p> <p>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p>
<p><b>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b>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p>	<p><b>제5조(제설·제빙 시기)</b>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p> <p>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p>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u></p> <p><u>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u></p> <p><u>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u></p>	<p><u>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 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제7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u></li> <li><u>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u></li> <li><u>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u></li> <li><u>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u></li> </ol> <p><u>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u></p>

현행	개정안										
<p>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9조(제설·제빙 관리부서)</b>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p> <p><b>[별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기본지상 적설하중 (kN/m<sup>2</sup>)</th> <th colspan="2" style="width: 60%;">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th> <th rowspan="2" style="width: 20%;">비고</th> </tr> <tr> <th style="width: 20%;">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th> <th style="width: 20%;">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 지방) 가중치 (1.5배) 적용 환산 적설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5이하 지역 (고양시에 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d style="text-align: center;">37.5</td> <td></td> </tr> </tbody> </table> <p>비고 1.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p>	기본지상 적설하중 (kN/m <sup>2</sup> )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 지방) 가중치 (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0.5이하 지역 (고양시에 해당)	25.0	37.5	
기본지상 적설하중 (kN/m <sup>2</sup> )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 지방) 가중치 (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0.5이하 지역 (고양시에 해당)	25.0	37.5									

###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7-280호(2007.09.1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2010-274호(2010.09.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와 고양시고시 제2013-189호(2013.06.21.), 제2014-96호(2014.03.28.), 제2014-141호(2014.05.13.), 제2014-357호(2014.12.09.), 제2014-379호(2014.12.16.), 제2015-318호(2015.10.30.), 제2016-260호(2016.10.25.)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또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는 고양시청 도시재생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고양시청 별관(건우빌딩) 4층)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4. 11.

고양시장

- 아 래 -

1.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 : 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고양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원	1,130,624.0	-	1,130,624.0	

2. 목표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20년

3. 기본방향 및 목표

-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통한 신·구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지역생활권 회복
-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주택 단지 조성 등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 고양복합타운과 연계한 업무·상업 복합단지 및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4.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130,624.0	-	1,130,624.0	100.0		
주택 용지	소 계	581,634.5	증)1,450.0	583,084.5	51.6	
	공동주택	568,298.5	증)1,450.0	569,748.5	50.4	원당 주공1·2단지 포함
	일반주택	13,336.0	-	13,336.0	1.2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존치
상업 용지	소계	32,806.0	-	32,806.0	2.9	
	상업업무	32,806.0	-	32,806.0	2.9	덕양대로변 상업지역 존치
종교 용지	소계	6,568.0	증)586.0	7,154.0	0.6	
	종교시설	6,568.0	증)586.0	7,154.0	0.6	원당성당, 원당교회 존치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09,615.5	감)2,036.0	507,579.5	44.9	
	도 로	167,569.3	증)2.0	167,571.3	14.8	보행자전용도로 포함(13,961㎡)
	공 원	163,696.3	감)1,911.0	161,785.3	14.3	마상공원면적 포함(110,295㎡)
	녹 지	46,863.7	-	46,863.7	4.1	완충녹지, 연결녹지 지하보도(259㎡) 제외
	학 교	46,267.0	-	46,267.0	4.1	원당초교, 성사초교, 신설초1,신설초2
	미래공공용지	6,243.0	-	6,243.0	0.6	2개소(미래 공공시설 수요 대비)
	고양복합타운	45,747.0	-	45,747.0	4.0	첨단행정/IT센터, 보건/교육, 문화/관광, 교육, 파출소(존치)
	복합커뮤니티	5,846.4	감)127.0	5,719.4	0.5	2개소(주교, 성사복합커뮤니티)
	사회복지시설	3,000.0	-	3,000.0	0.3	노인복지회관
	공공공지	5,111.8	-	5,111.8	0.5	3개소
	철 도	13,809.0	-	13,809.0	1.2	서울교외선통과구간, 도로중복 면적(1,362㎡)제외
	수도시설	1,853.0	-	1,853.0	0.2	마상공원내 주교배수지 존치
	기타	3,609.0	-	3,609.0	0.3	KT 존치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비율(%)		인구수(인)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7,181	17,053	100	100	45,357	45,019	100	100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소 계	12,359	12,231	71.9	71.7	32,628	32,290	71.9	71.7
		40㎡ 이하	2,405	2,284	14.0	13.4	6,350	6,030	14.0	13.4
		40~60㎡	5,866	5,856	34.1	34.3	15,486	15,460	34.1	34.3
		60~85㎡	3,292	3,295	19.2	19.3	8,691	8,699	19.2	19.3
		85㎡ 초과	796	796	4.6	4.7	2,101	2,101	4.6	4.7
존치관리구역		소 계	4,822	4,822	28.1	28.3	12,729	12,729	28.1	28.3
		공동주택	4,290	4,290	25.0	25.2	11,325	11,325	25.0	25.2
		기타	532	532	3.1	3.1	1,404	1,404	3.1	3.1

○ 주택의 규모별 건설공급계획

구분	면적(㎡)	토지등 소유자	주택 (세대)	분 양					임 대				
				소 계	40㎡ 이하	40 ~60㎡	60 ~85㎡	85㎡ 초과	소 계	40㎡ 이하	40 ~60㎡	60 ~85㎡	
합계	기정	613,322.40	8,176	12,359	10,101	190	5,823	3,292	796	2,258	2,215	43	-
	변경	613,322.40	8,176	12,231	10,094	190	5,813	3,295	796	2,137	2,094	43	-
원당1	123,685.40	1,851	2,738	2,229	190	1,269	735	35	509	466	43	-	
원당2	65,190	947	1,397	1,129	-	866	231	32	268	268	-	-	
원당 4	기정	61,958	643	1,356	1,118	-	857	261	-	238	238	-	-
	변경	61,958	643	1,228	1,111	-	847	264	-	117	117	-	-
원당5	157,206	1,446	2,438	2,006	-	674	993	339	432	432	-	-	
원당6	96,940	1,297	1,817	1,507	-	559	612	336	310	310	-	-	
원당7	68,070	1,227	1,574	1,304	-	920	330	54	270	270	-	-	
원당8	40,273	765	1,039	808	-	678	130	-	231	231	-	-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대책 : 변경

○ 임대주택 건설계획

- 고양시고시 제2016-228호(2016.09.20.)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7퍼센트→9퍼센트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임

○ 촉진구역별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 분	계획 세대 (세대)	임대 주택 (세대)	계획세대수의 17%→9%				증가용적률의 20%					
			소 계	40㎡ 이하	40 ~60㎡	60 ~85㎡	소 계	40㎡ 이하	40 ~60㎡	60 ~85㎡		
합 계	기정	12,359	2,258	1,912	1,912	-	-	346	303	43	-	
	변경	12,231	2,137	1,791	1,791	-	-	346	303	43	-	
비 율(%)		-	100.0	83.8	83.8	-	-	16.2	14.2	2.0	-	
주택 재개발	1구역	2,738	509	466	466	-	-	43	-	43	-	
	2구역	1,397	268	214	214	-	-	54	54	-	-	
	4구역	기정	1,356	238	230	230	-	-	8	8	-	-
		변경	1,228	117	109	109	-	-	8	8	-	-
	5구역	2,438	432	351	351	-	-	81	81	-	-	
	6구역	1,817	310	237	237	-	-	73	73	-	-	
	7구역	1,574	270	215	215	-	-	55	55	-	-	
	8구역	1,039	231	199	199	-	-	32	32	-	-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3	121,023	-	감)127	13	120,896	
공공청사	1	52,491	-	-	1	52,491	
파 출 소	(1)	(470)	-	-	(1)	(470)	기정계획유지
보 건 소	-	-	-	-	-	-	
시 청	-	-	-	-	-	-	
동사무소	-	-	-	-	-	-	
고양복합타운	1	52,491	-	-	1	52,491	
학 교	4	46,267	-	-	4	46,267	
복합커뮤니티 센터	2	5,870	-	감)127	2	5,743	성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시설	1	3,000	-	-	1	3,000	노인복지회관
공공공지	4	11,395	-	-	4	11,395	원당상업구역 내 미래공공공지 제외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촉진구역내 계획 공원·녹지면적 (㎡)	촉진구역내 기존 공원·녹지면적 (㎡)	촉진구역내 확보 공원·녹지면적 (㎡)	면적비율기준		세대당면적기준	
				촉진사업 구역면적 (㎡)	공원 녹지율 (%)	촉진사업 계획세대수 (세대)	세대당 공원·녹지 면적 (㎡)
기정	210,607.0	139,220.0	82,248.0	682,124.4	12.1	12,359	6.7
변경	208,696.0	139,220.0	80,337.0	682,124.4	11.8	12,231	6.6

6) 교통계획 :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8장 교통계획)에 명시

7) 경관계획 :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9장 경관계획)에 명시

8)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  
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원당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다.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61,958	-	61,958	100.0	
주거 지역	소계	53,469	증)2,019	55,488	89.6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469	증)2,019	55,488	89.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489	감)2,019	6,470	10.4	

라. 원당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마. 원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바. 원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사. 복합타운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	구분	기준용적률	안화용적률	추가용적률	계획용적률	건폐율	비고
원당1구역	기정	210.4	48.9	23.9	283.2%이하	60%이하	주택 재개발
원당2구역	기정	210.0	45.3	23.3	278.6%이하		
원당4구역	기정	210.0	42.3	22.7	275.0%이하		
	변경	210.0	37.7	19.3	267.0%이하		
원당5구역	기정	230.0	42.0	23.0	295.0%이하		
원당6구역	기정	210.0	52.0	23.0	285.0%이하		
원당7구역	기정	210.0	41.2	23.0	274.2%이하		
원당8구역	기정	210.7	38.1	23.0	271.8%이하		
고양복합타운	기정	-	-	-	220.0%이하	60%이하	도시계획 시설사업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추진지구 전체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

구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추진지구면적 =1,130,624㎡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반 시 설	소계	509,615.5	감)2,036.0	507,579.5	45.1	감)0.2	44.9	
	도로	167,569.3	증)2.0	167,571.3	14.8	-	14.8	
	철 도	13,809.0	-	13,809.0	1.1	-	1.1	
	공원	163,696.3	감)1,911.0	161,785.3	14.5	감)0.2	14.3	
	녹지	46,863.7	-	46,863.7	4.1	-	4.1	
	공공공지	5,111.8	-	5,111.8	0.5	-	0.5	
	학교	46,267.0	-	46,267.0	4.1	-	4.1	신설초1, 신설초2
	사회복지	3,000	-	3,000.0	0.3	-	0.3	
	공공청사	51,593.4	감)127.0	51,466.4	4.6	-	4.6	고양복합타운, 복합커뮤니티센터
	수도시설	1,853.0	-	1,853.0	0.2	-	0.2	
	시장	-	-	-	-	-	-	
기타	9,852.0	-	9,852.0	0.9	-	0.9	미래공공용지, KT	

나.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면적 산정 (변경)

구역명	촉진구역 면적 (㎡)	계획기반 시설 (㎡)	신설기반 시설 (㎡)	존치기반 시설 (㎡)	폐지후 대지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신설기반 시설 중 유상공급 (㎡)	신설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소계	기정	613,322.4	222,472.9	137,213.6	85,259.3	73,168.0	-	6,270.7	57,774.9	10.9
	변경	613,322.4	220,436.9	136,705.6	83,731.3	72,828.0	-	6,798.7	57,078.9	10.7
원당1	123,685.4	42,692.9	30,052.6	12,640.3	16,097.0	-	1,404.7	12,550.9	11.3	
원당2	65,190.0	23,836.0	18,158.0	5,678.0	11,409.0	-	800.0	5,949.0	10.0	
원당 4	기정	61,958.0	21,216.0	13,693.0	7,523.0	6,257.0	-	1,616.0	5,820.0	10.6
	변경	61,958.0	19,180.0	13,185.0	5,995.0	5,917.0	-	2,144.0	5,124.0	9.1
원당5	157,206.0	71,585.0	34,703.0	36,882.0	21,274.0	-	1,397.0	12,032.0	10.0	
원당6	96,940.0	30,262.0	20,487.0	9,775.0	8,294.0	-	351.0	11,842.0	13.6	
원당7	68,070.0	20,791.0	14,386.0	6,405.0	7,540.0	-	666.0	6,180.0	10.0	
원당8	40,273.0	12,090.0	5,734.0	6,356.0	2,297.0	-	36.0	3,401.0	10.0	

다. 기반시설 설치 사업분담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자족성계획) :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나. 원당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1)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1,958	-	61,95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1,216	감) 2,036	19,180	31.0	
	도로	5,648	증) 2	5,650	9.1	
	공원	9,441	감) 1,911	7,530	12.2	
	복합커뮤니티	2,518	감) 127	2,391	3.9	
	K T	3,609	-	3,609	5.8	
획지	소계	40,742	증) 2,036	42,778	69.0	
	공동주택	40,742	증) 1,450	42,192	68.1	
	종교시설	-	증) 586	586	0.9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계획용적률(%)
명칭	면적(㎡)				
4-1	42,192	덕양구 성사동 405-8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67%이하
4-2	2,391	덕양구 성사동 405-19 일원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	60%이하	230%이하
4-3	586	덕양구 성사동 407-4 일원	종교용지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3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1,228세대 [임대 117세대(9.5%)]			
	40㎡ 이하	117세대 (9.5%) [임대 117세대]			
	40~60㎡	847세대 (70.0%)			
	60~85㎡	264세대 (21.5%)			
	85㎡ 초과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9%이상 확보, 증가되는 용적률의 20%이상 확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원당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40㎡ 이하	40㎡~60㎡ 이하	비 고
세대수	117세대(9.5%)	117세대(9.5%)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면 적 (㎡)	비 고
관리사무소		254.57	
공동작업장		283.91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4,712.78	법적 2,956.0㎡ 이상
	경로당	144.72	
	보육시설	252.39	
	작은도서관	165.17	
	주민운동시설	2,440.31	
	어린이놀이터	1,242.33	
	기타 (커뮤니티센터, 집회실 등)	467.86	
근린생활시설		2,662.42	

■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43	10 ~28	국지 도로	513 (340)	대3-25 성사동706도	중2-원7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변경	소로	1	43	10 ~28	국지 도로	513 (340)	대3-25 성사동706도	중2-원7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원5	12 ~18	국지 도로	360 (145)	광3-7 성사동708	소덕2-149 성사동493-4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7	15 ~18	국지 도로	319 (201)	대3-원1 성사동407-8	중1-원2 성사동488-4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10-274호	
변경	중로	2	원7	15 ~20	국지 도로	319 (201)	대3-원1 성사동407-8	중1-원2 성사동488-42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폭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문화예술	근린공원	성사동 488-40일원	10,262 (8,518)	감) 2,048	8,214 (6,47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변경	2	-	소공원	성사동 493-6일원	923 (923)	증) 137	1,060 (1,060)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공청사	복합 커뮤니티	성사동 406-5 일원	2,518	감) 127	2,391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 라. 원당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 마. 원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 바. 원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 사. 복합타운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없음

16) 존치정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양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성사동 일원	1,130,624.0	-	1,130,624.0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정 정	변경	변 경 후		
총 계	1,306,238.4	-	-	1,306,238.4		
주 거 지 역	소 계	1,016,899.8	1,026,073.8	증) 2,019	1,028,092.8	78.7
	제1종일반주거지역	3,632.0	-	-	3,632.0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652,073.8	-	증) 2,019	654,092.8	5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12,998.0	-	-	312,998.0	24.0
	준주거지역	57,370.0	-	-	57,370.0	4.4
일반상업지역	118,414.0	-	-	118,414.0	9.0	
자연녹지지역	161,750.6	-	감) 2,019	159,731.6	12.3	

※정정사항은 고양시 고시 제2015-318호(2015.10.30.)의 오기에 대한 정정사항임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촉진계획 결정권자가 별도 결정·고시 한다.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1	덕양구 성사동	제2종일반지역	자연녹지지역	681	·상업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및 공원 선형 변경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
2	상동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지역	2,700	·종교시설 대체부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원 일부의 종교용지 대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도 로 [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광로	3	7	40	주간선	2,200 (950)	광장44 성사동131-5	대로1-10 주교동223-1	일반 도로		경고제11호 77-01-27	
기정	대로	2	6	30	주간선	6,492 (350)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기정	대로	2	11	30	주간선	11,160	대로3-25	벽제동산38-14	일반		경고제440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46		(225)	성사동523-5		도로		74-12-16	
기정	대로	3	25	25 ~28	보조 간선	810	광로3-7 성사동699-10	대로2-11 성사동523-5	일반 도로		건고제570호 71-09-27	
기정	대로	3	26	25 ~30	주간선	2,165 (1,126)	대3-28 원당동산48-9	광3-7 성사동152-3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101	대3-25 성사동710-6도	소1-43 성사동697-14대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1	43	10 ~28	국지 도로	513	대3-25 성사동706도	중2-원7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변경	소로	1	43	10 ~28	국지 도로	513	대3-25 성사동706도	중2-원7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46	10	국지 도로	169	대3-25 주교동640도	소1-47 주교동63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중로	1	원1	20 ~22	집산 도로	1,037	대3-26 주교동633	대3-26 주교동26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1	원2	20	집산 도로	548	대3-25 성사동516-9	대2-6 성사동681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1	원3	20	집산 도로	183	대2-6 성사동410-18	대3-원1 성사동396-10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1	원4	20	특수 도로	63	대3-26 주교동630	소1-47 주교동638도	보행자 전용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58	15 ~20	집산 도로	1,113 (868)	대1-10 주교동산84-1	대3-25 주교동645	일반 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기정	중로	2	143	15	국지 도로	134	대2-11 성사동717	소3-원1 성사동496-13	일반 도로		건고제61호 82-12-16	
기정	중로	2	원1	15 ~18	국지 도로	946	중2-58 주교동297-8	중1-원1 주교동56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2	15	국지 도로	285	중2-원1 주교동303-4	중2-58 주교동313-2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3	15	국지 도로	662	광3-7 주교동637도	중2-58 주교동297-8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4	15	국지 도로	255	중2-원3 주교동594-2	중1-원1 주교동588-11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5	12 ~18	국지 도로	219	소1-43 성사동366-9	소2-149 성사동493-4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141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중로	2	원6	17	국지 도로	55	광3-7 성사동708	대3-원1 성사동395-6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7	15 ~18	국지 도로	319	대3-원1 성사동407-8	중1-원2 성사동488-42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변경	중로	2	원7	15 ~20	국지 도로	319	대3-원1 성사동407-8	중1-원2 성사동488-42	일반 도로			일부구간확폭
기정	소로	1	원1	10	국지 도로	91	중1-원1 주교동628	연결녹지5 주교동573-1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108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1	44	10	국지 도로	201	대3-25 주교동640도	소1-47 주교동63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47	10	국지 도로	527	완충녹지-1 주교동639도	중2-58 주교동623대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1	원2	10	국지 도로	205	대3-26 성사동산1-5	중1-원1 주교동62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1	원8	12	국지 도로	61	중1-원2 성사동422-3	성사동422-17	일반 도로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기정	소로	2	원1	8	국지 도로	506 (398)	대3-26 주교동624	중2-원1 주교동551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2	107	8	국지 도로	108	광3-7 성사동708도	대로3-원1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2	108	8	국지 도로	45	소2-110 성사동711도	소2-111 성사동700-7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2	109	8	국지 도로	359	소2-111 성사동702-19대	대로3-원1 성사동712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118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10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2	112	8	국지 도로	102	소1-42 성사동710도	소2-113 성사동897대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110	중2-원5 성사동685-9도	대3-25 성사동71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162	대3-25 주교동640도	소1-47 주교동63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14	8	국지 도로	425	중2-58 주교동645대	소2-116 주교동642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537	중2-58 주교동622대	광3-7 주교동640도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	소로	2	117	8	국지 도로	179	대3-25 주교동640도	소1-47 주교동63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18	8	국지 도로	187	대3-25 주교동640도	소1-47 주교동638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소로	2	149	8	국지 도로	108	중2-원5 성사동506-37	대3-25 성사동502-13	일반 도로		기존원능1 성사	
기정	소로	2	153	8	국지 도로	231	중1-원2 성사동500-5	소덕2-113 성사동367-12	일반 도로		기존원능1 성사	
기정	소로	3	133	6~18	국지 도로	502	중2-58 성사동48-5답	성사동546-3전	일반 도로		고고01-8호 01-01-22	
기정	소로	3	165	4	특수 도로	152	대로2-11 성사동717	소로3-133 성사동546-3	보행자 전용		경고2형 제5076호 06-05-29	
기정	소로	3	원1	5	국지 도로	80	중2-143 성사동496-13	어린이공원193 성사동496-20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49	소3-133 성사동 875도	대3-26 성사동539-6철	지하 도로		-	*시설중복결정 -철도-4(95㎡) -대로3-26(20㎡)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43	소로1-43	변경 -일부구간 선형조정	촉진지구 해제(원당상업구역)에 따른 도로 선형조정
중로2-원7	중로1-원7	변경 (B=15~18m→15~20m)	원당4구역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일부구간 확폭

■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3	노외주차장	주교동 206-1	12,095	-	12,095	고고제78호 98-09-18	지구 외

■ 철 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정	주요경과지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도당동 182-1	선유동 고양시계	시청	10,580 (1,160)	147,044 (13,809)	경고제358호 88-12-31	교외선

※ ( )는 원당지구 내 연장, 면적임

(2) 공간시설

■ 공 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마상	근린공원	주교동 산26-1일원	110,427.0 (110,295.0)	-	110,427.0 (110,295.0)	경고제570호 71-09-27	
기정	1	음악	근린공원	주교동 559-1일원	17,781.3 (13,889.3)	-	17,781.3 (13,889.3)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2	조각	근린공원	주교동 600일원	17,385.0	-	17,385.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변경	3	문화예술	근린공원	성사동 488-40일원	10,262.0 (8,518)	감) 2,048	8,214.0 (6,47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149	주교1	어린이공원	주교동610	1,500	-	1,500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150	주교2	어린이공원	성사동705	1,500	-	1,500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151	주교3	어린이공원	주교동619-3	1,500	-	1,500	경고제133호 81-05-13	
기정	193	원당1	어린이공원	성사동715	4,406.0	-	4,406.0	경고제5010호 06-01-16	구적 오차 (47㎡)
기정	206	주공1	어린이공원	주교동645-5	1,943.0	-	1,943.0	경고제5076호	

								06-05-29	
기정	194	원당2	소공원	성사동715	748.0	-	748.0	경고제5010호 06-01-16	
변경	2	원당3	소공원	성사동 493-6일원	923.0	증) 137	1,060.0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 )는 원당지구내 면적임

주) 최초결정 면적에 따른 구적오차는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측량을 통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문화예술	· 변경 (감 : 2,048㎡)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종교시설(존치) 대체부지 협의 완료 후 종교시설 조성 위해 공원 면적 감소 · 원당4구역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일부 구간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2	소공원	· 변경 (증 : 137㎡)	· 공공공지와 연계한 소공원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면적 증가

■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성사동 715	1,556.0	-	1,556.0	경고제5010호 06-01-16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주교동 645-6	935.0	-	935.0	경고제5076호 06-05-29	
기정	42	녹지	완충녹지	광로 3-7호선변	5,237.0	-	5,237.0	경고제108호 90-04-04	지구 외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주교동 49-54 일원	17,670.0	-	17,670.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주교동 630 일원	9,369.0	-	9,369.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성사동 424-13일원	3,627.0 (3,311.0)	-	3,627.0 (3,311.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76-6 일원	2,629.0	-	2,629.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78 일원	2,501.0	-	2,501.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26-17 일원	1,036.0	-	1,036.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61 일원	2,250.4	-	2,250.4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72 일원	1,732.3	-	1,732.3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대로 3-46호선변	10,125.0	-	10,125.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지구 외

※ ( )는 원당지구내 면적임

■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공공공지	주교동 645-4	1,299.0	-	1,299.0	경고제5076호 06-05-29	
기정	1	공공공지	주교동 313-8 일원	905.8	-	905.8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5	공공공지	성사동 491-3일원	2,907.0	-	2,907.0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기정	6	공공공지	성사동 494-2일원	2,251.0	-	2,251.0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기정	7	공공공지	성사동 488-22일원	1,622.0	-	1,622.0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수도9	주교 배수지	주교동 산26-46 일원	1,853	-	1,853	고고제78호 98-09-18	

■ 시 장 [변경없음]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시장	소매시장	성사동 698-2	1,668	-	1,668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7	공공청사	파출소	주교동 605	470.0	-	470.0		
기정	1	공공청사	고양 복합타운	주교동 600 일원	52,491.0	-	52,491.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2	공공청사	복합 커뮤니티	주교동 572-4 일원	3,328.4	-	3,328.4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변경	3	공공청사	복합 커뮤니티	성사동 406-5 일원	2,518.0	감)127	2,391.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복합 커뮤니티	· 변경 감) 127㎡	·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정차대 위치변경으로 면적 감소

■ 학 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8	학교	초등학교	주교동313-8일원	13,466	-	13,466	경고제102호 87-04-18	원당
기정	49	학교	초등학교	성사동716일원	14,087	-	14,087	건고제61호 85-02-16	성사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성사동 422-1 일원	3,000	-	3,00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고 양 시 장

## 1. 사방지 지정내역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지정면적 (㎡)	사업의 종류
시	구	동	번지				
고양	덕양	선유	산43-2	임	137,752	28	야계사방사업 (계류보전)
			180	전	1,276	138	
			184	전	3,154	5	
			506	구	5,441	244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2016년 사방사업지)
3. 지정하는 사업의 종류 : 야계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
4.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17. 4. 11.
5. 사방지 고시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6.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지정구역도

2016년 사방사업 (고양)


# 사 방 지 지 정 구 역 도

4

A1축척 1,000 분의 1  
A3축척 2,000 분의 1



<< 지정 내역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보 기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번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3-2	임	137,762	28		사업지
			180	전	1,276	138		
			184	전	3,164	6		
			606	구	6,441	244		
소 계					148,777	41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의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및 일산서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04월 11일

고 양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4-2번지 일원
- 면적 : 1,466,137.7㎡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명절마을 특화정비 사업, 킨텍스 남단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자본의 유입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기간완료 전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로 함)

### 5.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6.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재축, 용도변경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7.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열람장소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열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9. 기타 문의사항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공고 제 2017-645호

## 고양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고양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고양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을 위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04.

고양시장 (인)

1. 모집 대상 : 고양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 신청 자격 및 모집인원

○ 자격별 모집인원

가. 공고일 현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교통분야의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근무 중인 자

나. 공고일 현재 교통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 포함)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중인 자

○ 분야별 모집인원 :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분야

3. 위원회의 주요 활동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활동

4. 선발 기준

○ 교통분야의 전문성, 활동경력 등 별도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5. 접수 일정 및 발표

○ 공고(접수) 기간 : 2017. 04 . 11 . ~ 2017. 04. 26.(15일간)

○ 발 표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2017. 04. 26.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서명 첨부하여 송부요망)

- 주소 : 고양시 교통정보센터(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3)

- FAX : 031-8075-4974(교통정보센터)

- E-mail : yjh77@korea.kr

7.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1회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교통정책과(☎031-8075-3831)으로 문의바람.

# 공 고

고양시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인 명 : 고양시일산서구청장인(민원사무전용/탄현동전용)
2. 최초사용년월일 : 2017. 4. 26.
3. 신조사유 : 인증기 신규 구입
4. 신조·폐기공인 인영

신조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고양시일산서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신조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고양시일산서구청장인 (민원사무)	

2017. 4. .

## 고양시일산서구청장

